

2024년 [재]남해마늘연구소 종합감사결과

- 대상기관 : (재)남해마늘연구소
- 감사분야 : 조직 및 인사관리, 목적사업 추진, 출자·출연금 및 사업수입금의 관리·운영 실태, 세출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4. 2. 19. ~ 2024. 2. 23.<5일간>
- 감사범위 : 2021. 2. 1. ~ 2024. 1.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4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신분상 조치(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계	훈계	주의	계	시정	주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1	-	1	12	6	6	1,814	1,814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직원 성과급 지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III. 주요 항목별 편성 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1] <2022년 실적분 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비고
000 외 00명	00,000천원	2023. 0. 0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통보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 성과급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되,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 총액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남해마늘연구소는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고 등급별 인원 비율을 20% ~ 10%로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2022년 실적분 직원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연봉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준액으로 하여 6개월 미만 근무자 ㉠명을 제외한 총 ㉡명에 대하여 등급별 인원 비율을 <표2>와 같이 8% ~ 31%로 부당하게 배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표2] <직원 성과급 지급비율 현황>

평가등급	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지급율		지급기준액의 50%	지급기준액의 40%	지급기준액의 35%	지급기준액의 30%	미지급
인원배분	00명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유특허 관리에 관한 사항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별첨과 같이 총 〇〇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〇〇개는 단독 권리자이고, 〇개는 남해〇〇〇〇〇〇과 공동 권리자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된다.

「특허법」 제79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동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무발명보상규정」 제8조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특허의 가치나 산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재)남해마늘연구소는 〇〇개 특허 등의 권리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간 등록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0〇〇년 〇월부터 현재까지 총 〇〇,〇〇〇천원의 연간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보유한 다수의 특허 등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지만, 여

전히 실용화되지 못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특허권 등의 유지비용만 발생하고 있다.

기술의 분야 및 특성에 따라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기술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유한 특허의 기술적·권리적 특성과 시장에서 활용되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 활용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등록된 특허가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고 관리·유지비용만 발생하는 미활용 특허로 남지 않도록 출원 단계에서부터 활용가치 측면에서 특허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등록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 및 이의 제조방법(20○○. ○. ○. 등록)'과 '○○-○○○○○○○○ 및 ○○-○○○○○○○ 활성을 동시에 갖는 ○○○○○○○○○○○ NGI01 규주 및 이의 용도(20○○. ○. ○○. 등록)' ◎건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문가의 평가나 직무발명심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및 이의 제조방법(20○○. ○. ○. 등록)'과 '○○-○○○○○○○○ 및 ○○-○○○○○○○ 활성을 동시에 갖는 ○○○○○○○○○○○ NGI01 규주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나 직무발명심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시기 바라며, 미활용특허 발생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 단계부터 특허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 등록을 내실화하고 특허활용 방법을 다각화하여 보유 특허 등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재무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입찰 공고문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입찰 절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20○○. ○. ○. 나라장터에 남해마늘연구소 제20○○-○○호로 '(재)남해마늘연구소 ○○○(○○○○○○○○) 제작 설치 ○○구매 입찰[규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가·병가 사용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구소 직원과 과견근무 중인 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공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원복무규정」 제14조에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투표에 참가할 때,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1>과 같이 ○○○○, ○○○○ ○○ 등의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표1]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부서명	성명	일시	사유	비고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3. 병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원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계속하여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3항에는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2>와 같이 생산원 ○○○이 진단서 첨부없이 연간 ○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 1일분 ○○○,○○○원을 지급하였고, 행정원 ○○○, 공무직 ○○○는 각각 20○○. ○. ○○.과 20○○. ○. ○○.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으로 인한 병원 진료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휴가 일수 공제대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표2] <병가 사용 부적정 현황>

부서	성명	병가 사용		연차 사용			비고
		일시	사유	총일수	사용	잔여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기업지원실 ○○○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원은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직원복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가·병가 사용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이사회 운영 및 임원 선임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정관」 및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2. 이사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정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고 차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되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부의안을 배부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개최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연구소장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1>과 같이 ○○○·○○○예산 편성안, ○○○○○ 보고, ○○○ ○○○의 건 등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고 의사록에 이사·감사의 기명·날인도 누락하였다.

[표1] <이사회 부적정 운영현황>

연번	이사회명	개최방법	안건	계획보고	소집통보	개최일	지적사항
1							
2							
3							
4							
5							
6							
7							
8							
9							
10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3. 임원 선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임원 후보자 모집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공개모집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하되, 임원의 임기 및 인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모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2>와 같이 선임직 이사 ○○○○의 임기가 20○○. ○. ○. ~ 20○○. ○. ○. 임에도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공고절차 없이 이사회 보고만으로 ○○○○으로 변경하고 그 임기를 20○○. ○○. ○. ~ 20○○. ○○. ○.로 정하였으며, 20○○. ○. ○○.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을 ○○○○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을 선임하였다.

[표2] <선임직 이사 변경현황>

연번	이사회명	전임이사		후임이사		취임일	심의일	비고
		성명	임기	성명	임기			
1								
2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 및 임원 선임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재)남해마늘연구소 입주기업 승인절차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계약을 맺고 시제품 및 기술 개발, 입주업체의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마늘연구소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 규정」에 따르면 창업보육실에 마늘과 연계한 기업 및 창업예정자, 인프라 기업 등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연구소장은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조사·평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나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입주 시에는 관리보증금을 전액 납부하고 고정관리비(임차료)는 월별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와 같이 ㉠개의 입주업체의 ㉡ 신청이나 입주 ㉢ ㉢ ㉢ 신청에 대해 승인 제외대상 확인이나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승인하였으며, ㉣ ㉣ ㉣ 연구소인증센터에 대해서는 ㉤ ㉤ ㉤ 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입주기업 승인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입주기업 현황>

연번	업체명	입주기간(연장기간)	임대장소	임대보증금 (천원)	월 사용료 (천원)	비고
1						

연번	업체명	입주기간(연장기간)	임대장소	임대보증금 (천원)	월 사용료 (천원)	비고
2						
3						
4						

※ 자료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재단법인마늘연구소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승인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기]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과목해소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비나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 등의 의한 광고료, 위원회 등 운영수당과 이사회 참석 수당, 회의 직전·직후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제공은 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교육, 세미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매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는 각 기관의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 편성하되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및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및 급량비로 집행 가능하며,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행사 개최를 위한 각종 일반 수용비나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로 또는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에 집행하되, 행사는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는 [표]와 같이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해야 할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행사홍보비로 집행할 수 없는 타 기관 주관의 행사에

연도	성명	포인트 배정				근무기간	적정금액 (천원)	청구금액 (천원)	과다 지급액 (천원)
		계	기본	근속	가족				
2022									
2023									
2023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다 지급액 ①,②③④,⑤⑥⑦원은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복지포인트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는 사업추진과 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해 일비 및 여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위원회등실비보상규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소 소속직원이 아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과 감사,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직원 교육 및 임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기타 연구소의 시책 참여자로서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 지급액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 위원회 등 실비보상기준

구분	지급액
위원수당(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 (단,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〇〇〇〇-〇 지원사업 및 〇〇〇〇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심의를 위해 20〇〇. 〇. 〇.(목) 10:00 ~ 17:00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시간(점심시간 1시간 공제)에 대한 심의수당 ③④⑤,⑥⑦⑧원과 버스 운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위원 〇명에게 ③④⑤,⑥⑦⑧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심의수당 지급 현황>

성명	소속 및 직급	지급수당 (원)	적정 지급액(원)		부당 지급액 (원)
			수당	여비	
계					

성명	소속 및 직급	지급수당 (원)	적정 지급액(원)		부당 지급액 (원)
			수당	여비	

※ 자료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여비 : 2023. 6월 시외버스 운임 기준

[조치할 사항]

과다 집행액 ③③③,③③③원은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단법인남해마늘연구소 위원회등실비보상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관리 소홀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직원 정원수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정원가산, 부서운영)를 편성하여 신용카드로 집행하고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제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남해마늘연구소는 20○○년과 20○○년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표1>과 같이 ③③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나 참석대상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표2>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20○○년 ~ 20○○년 ○·○○ ○○ 및 ○○○○ 자녀를 둔 직원 격려를 위해 ③③③을 구입하였음에도 지급 관리대장에 ○○○○, ○○○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1] <건당 50만 원 이상 증빙서류 미작성 현황>

지출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역	금액(천원)	비고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표2] <상품권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현황>

지출일자	예산과목	구입내역	금액(천원)	비고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3.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V. 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소관 신용카드 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2>와 같이 카드 재발급 및 보관책임자 변경 즉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현행화하지 않고 만료기한 도래로 해지된 카드 등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었음에도 관리하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표]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현황>

발급일자	만료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비고

발급일자	만료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비고

※ 자료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정비하시고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용역 계약업무 추진 소홀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금액 산정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 도급 및 용역 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 ○○(동편)○○면 ○○○○ ○○공사' 추진 시 지역개발채권이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도급사에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상의 채권매입금액이 <표>와 같이 100분의 1.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대금 청구액(A)	채권매입금액(B)	채권매입금 비율(B/A)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3.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 제출·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20○○. ○○. ○. ~ 20○○. ○○. ○○. 추진한 '20○○년 ○○○○○○ 지원사업_○○○ 남해 ○○ ○○○ 임가공 생산용역'은 계약금액이 ①천만원 이하로 계약보증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에도 확약서 첨부 없이 용역을 계약하여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과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 징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재)남해마늘연구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1. 업무개요(현황)

(재)남해마늘연구소는 준공된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고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실내건축은 1년, 방수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남해마늘연구소는 <표>와 같이 '○○○ ○○○ ○○ 방수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연 ②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년 ~ 20○○년 동안 하자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 ○○(동편)○○면 ○○○○ ○○공사'는 방수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지정하는 등 공사 하자관리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표] <하자검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	금액 (천원)	공사기간	시공업체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검사 횟수

공사명	계약일	금액 (천원)	공사기간	시공업체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검사 횟수

※ (재)남해마늘연구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 ○○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및 하자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